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황유정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981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황유정 의원(1명)

찬 성 자: 강석주, 고광민, 곽향기,
구미경, 김경훈, 김규남,
김동욱, 김영철, 김원태,
김재진, 김종길, 김춘곤,
김태수, 김현기, 김형재,
김혜영, 남궁역, 남창진,
민병주, 박 석, 박춘선,
서상열, 소영철, 신복자,
심미경, 옥재은, 왕정순,
유만희, 유정인, 윤기섭,
윤영희, 이경숙, 이민석,
이민옥, 이상욱, 이성배,
이소라, 이은림, 이종태,
이종환, 이희원, 최민규,
최유희, 허 훈, 황철규
의원(45명)

1. 제안이유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제정(2022. 7. 5.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사항 등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서울특별시 지속 가능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 및 이행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시민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나. 추진계획의 협의·조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7조)
- 다. 위원회가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시장에게 송부하며, 시장은 그 결과를 서울시의회에 보고 및 국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 라. 시장이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서울시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11조제3항)
- 마.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심의·자문 사항을 법률에 따라 정비함(안 제12조제2항)
- 바. 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관련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르도록 규정함(안 제18조제4항)
- 사.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20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 다. 기타 : 신 구조문 대비표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의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8조 앞의 “제5장 보칙”을 삭제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제5조 및 제6조로 한다.

제19조를 제22조로 하고, 제17조를 제19조로 하며, 제15조를 제17조로 하고, 제13조를 제15조로 하며, 제11조를 제13조로 하고, 제9조를 제11조로 하며, 제7조를 제9조로 하고, 제7조, 제8조 및 제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추진계획의 협의·조정) 시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 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사회적·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제4조 앞의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을 삭제한다.

제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

제9조(중전의 제7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4조”를 “제16조”로 한다.

제8조 앞의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를 삭제한다.

제1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21조를 제24조로 하고, 제18조를 제21조로 하며, 제16조를 제18조로 하고, 제14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2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0조를 제12조로 하며, 제8조를 제10조로 한다.

제10조(중전의 제8조)제2항 중 “제6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포함하여”를 “포함하여 2년마다”로 한다.

제11조(중전의 제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2조(중전의 제10조) 제2항제2호 중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지속가능발전 지표 개발·보급 및”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추진계획”을 “추진계획 협의·조정 및”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제9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정책의견 제시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7. 지방보고서의 작성

8. 교육·홍보

제18조(중전의 제16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제20조를 제23조로 하고,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제21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보칙

제24조(중전의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의 외교적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

· 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u> <u><신 설></u> <u>제4조 · 제5조 (생 략)</u> <u><신 설></u>	<u>제4조(시민과 사업자의 책무) ①</u> <u>서울특별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시의 지속가능발전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u> <u>② 사업자는 기업활동을 함에 있어 제5조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의 기본전략에 기초하여 환경적 · 사회적 · 윤리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u> <u><삭 제></u> <u>제2장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등</u> <u>제5조 · 제6조 (현행 제4조 및 제5조와 같음)</u> <u>제7조(추진계획의 협의 · 조정) 시</u> <u>장은 자치구의 지방추진계획이 시의 지방추진계획의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속가능발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호 협의 · 조정할 수 있다.</u>

<신 설>

제6조(추진상황의 점검) ① 시장은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 추진 실적에 대하여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제출받은 점검결과를 기본전략과 추진계획에 근거하여 검토하고, 그 결과를 해당 연

이 경우 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추진상황의 점검 등) ① 위원회는 최근 2년간의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결과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위원회로부터 보고받은 추진상황 점검 결과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의회에 보고하고 국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도 6월 말까지 시장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점검 결과에 따라 필
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
· 보완할 수 있다.

제7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③ (생 략)

④ 위원회는 중·장기 행정계획
을 검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운영협의회의 사
전검토와 조정을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검
토를 생략할 수 있다.

1. 2. (생 략)

⑤ · ⑥ (생 략)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신 설>

제8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
가능성 평가) ① (생 략)

② 위원회는 제1항에서 확정된
지속가능발전지표의 적용결과,
제6조제2항에 따른 추진계획 점
검결과를 포함하여 지속가능성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제9조(조례 제·개정에 따른 통보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제16조-----

-----.

-----.

1. 2.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삭 제>

제3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10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
가능성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8조제1항-----

----- 포함하여 2년마다 -

-----.

③ (현행과 같음)

제9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② (생략)

<신설>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신설>

제10조(설치 및 기능) ① (생략)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한다.

1. (생략)

2.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에 관한 자문

3. 추진계획 추진 상황 점검

4. 주요시정의 지속가능성 검토 및 평가

<신설>

5. (생략)

<신설>

제11조(지속가능발전 보고서의 작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시장은 법 제32조제5항에 따라 지속가능발전 지방보고서를 지체 없이 국가위원회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4장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2조(설치 및 기능)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현행과 같음)

2. 지속가능발전지표 개발·보급 및 -----

3. 추진계획 협의·조정 및 -----

4. 정책의견 제시

5. 제9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및 검토 결과 통보

6. (현행 제5호와 같음)

7. 지방보고서의 작성

<신 설>

6. 제7조제5항에 따른 조례안 또는 행정계획에 대한 검토

7. (생 략)

제11조 ~ 제15조 (생 략)

제16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생 략)

<신 설>

제17조 (생 략)

<신 설>

제5장 보칙

<신 설>

제18조 ~ 제20조 (생 략)

제21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① 시장은 기업 및 시민

8. 교육·홍보

<삭 제>

9. (현행 제7호와 같음)

제13조 ~ 제17조 (현행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와 같음)

제1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제척·기피·회피에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를 따른다.

제19조 (현행 제17조와 같음)

제20조(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지정)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및 위원회와의 업무협조 등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지정할 수 있다.

<삭 제>

제5장 보칙

제21조 ~ 제23조 (현행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와 같음)

제24조(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 지원) 시장은 기업 및 시민사회

사회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서울특별시 녹색서울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에서 정하는 녹색서울시민위원회는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유기적으로 상호 협력한다.

<신 설>

단체 등이 추진하는 지속가능발전 실천 활동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5조(국제협력 등) ①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국제기구 등과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개발도상국이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는 등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발전 추진에 적극적으로 협력함으로써 국제사회의 기대에 맞는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시의 외교적 위상

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제기구에서 제정하거나 도입하려는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제도·정책에 관한 동향과 정보를 수집·조사·분석하여 관련 제도·정책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동향·정보 및 대책에 관한 사항을 기업·시민들에게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기업과 시민들의 대응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지방자치 단체의 의무사항 등을 조례 반영하여 조례 전반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개정은 현행 같은 조례와 내용면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아 서울시 재정지출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 또한 안 제25조(국제협력 등)의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은 각종 자료 검토결과 **기추진사업¹⁾**으로 확인되어 규정신설에 의한 추가 비용발생 가능성이 낮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기추진사업]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2025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수행> : 159,200천원

⇒ 해당사업은 서울형 정책모델 해외프로젝트의 한국기업 참여 및 수주 지원하고, 서울정책의 우수성 국제사회 전파 및 서울의 브랜드 가치 제고하는 한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등 글로벌 가치 확산에 부응하는 기대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볼 경우 지속가능발전 국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판단됨